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김윤영 (Kim, Yun-young)*

(E-mail : ycmt7@hanmail.net)

이상원 (Lee, Sang-won)**

(E-mail : won12101@yongin.ac.kr)

논문접수일 : 2014년 5월 13 일

논문심사일 : 2014년 7월 20 일

게제확정일 : 2014년 8월 23 일

* 학위취득대학 : 수원대학교
현직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학위취득대학 : 동국대학교
현직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국문요약>

2014년 6월말 현재 26,854명의 탈북민이 국내로 입국하였다. 그럼에도 최소 3만에서 최대 10만여 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강제북송의 두려움 속에 한국입국과 서양망명을 희망하고 있다.

탈북민이 입국하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일정기간 조사를 받은 후 하나원에서 사회정착교육을 받고 거주지에 입주하여 정착생활을 한다. 정부는 탈북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장탈북민 간첩, 재입북, 해외 위장 망명, 범죄와 범죄피해 등의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하자, 이들의 신변보호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신변보호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신변보호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필자를 비롯한 소수의 연구자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 측면에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활동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신변안전 대책 법규 재정비, 신변보호경찰관의 역량 강화, 신변보호 관리시스템 체계화 등과 관련하여 미시적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북민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부나 사회에 의지하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있을 때 차별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북한, 탈북민, 신변보호, 신변보호경찰관, 정착

* 이 논문은 2013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 일부분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I. 서론

탈북민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한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4년 6월말 현재 26,854명이 입국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최소 3만에서 최대 10만여 명의 중국 체류 탈북민들은 강제 복송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은둔생활을 하면서 국내입국이나 서방망명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입국 탈북민에 대한 합동신문 조사를¹⁾ 거쳐 하나원(1999년 설립)에서 12주간의 기초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한 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고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민의 거주지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업무영역인 취업·의료·법률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애로사항 전반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실정에 있다. 이로 인해 탈북민들은 ‘어떠한 신변보호경찰관을 만나느냐 따라 사회정착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결국,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민의 사회정착과 적응과정 전반에서 조연자이자 보호자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최근 사회정착 탈북민들의 증가와 함께 위장 탈북민 간첩, 재입북, 해외 위장 망명, 범죄와 범죄피해 등의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하자, 이들의 신변보호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신변보호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필자를 비롯한 소수의 연구자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 측면에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전우택·윤덕용 외 2001; 김윤영 2008; 김윤영·이상원 2011).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탈북민의 사회정착 지원제도, 기

1) 국정원은 2014년 7월 28일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변경하고, 인권침해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조사실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등 시설과 업무 관행을 대폭 개선하였다.

존연구 분석, 설문조사 결과,²⁾ 필자의 10년 동안 연구경험 등을 통해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탈북민들의 사회일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개념정의

1) 탈북민

북한 주민들의 탈북행위는 북정정권 수립 이후 일인독재 체제에 대한 염증과 개인적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그러다 1990년 중반 북한의 자연재해로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하자 의식주 해결을 위해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탈북을 감행하였고, 이들을 ‘탈북자’라 호칭하게 되었다. 이들의 국내유입이 급증하자 1997년 7월 법률을 제정하면서 ‘북한이탈주민’³⁾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호칭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정 용어와 함께 탈북자를 사용하였다. 통일부는 탈북자(脫北者)라는 용어가 ‘탈북한 놈(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5년 여론조사 등을 거쳐 ‘탈북자’ 대체 용어로 ‘새터민’을 사용할 것으로 권장하였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은 ‘새터민’이란 용어가

2)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6일부터 20일간 2주간에 걸쳐 서울시 양천구, 강서구에 거주하는 탈북민 150명을 대상으로 21개 문항으로 작성한 설문서를 무작위로 배포한 후, 회수된 132부 중 무응답이 많거나 문항반응이 한 항목으로 몰려있는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121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화전민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2008년 11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글에서는 법정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을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탈북민이라는 ‘탈북이주민’의 약칭으로 북한주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사유 등으로 북한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한국이나 서방국가로 이주하여 정착한 주민을 의미한다. 이들의 이주방식은 중국으로 탈출한 후 해외공관 침투나 제3국을 통해 국내나 해외로 이주를 감행하고 있다. 탈북이주는 북한 일인독재체제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탈출한 후 새로운 사회로 이주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김윤영 2013, 109).

2) 탈북민 신변보호

신변보호 조치란 일반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김재광 2003, 80). 법률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 대상’(제2조 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이하 신변보호지침)은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 요인 제거 및 신변보호’(제9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국, 탈북민의 신변보호라 함은 하나 원을 수료한 후 거주지에 편입한 탈북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신변보호경찰관서장이 신변보호경찰관으로 지정한 보안경찰관이 상시적, 직·간접적 방법으로 신변위해 요소를 제거하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신변보호대상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탈북민에 대한 법률적 보호는 ‘정착시설보호’, ‘취업보호’, ‘거주지보호’, ‘생활보호’ 등이 있다.

2. 탈북민 이주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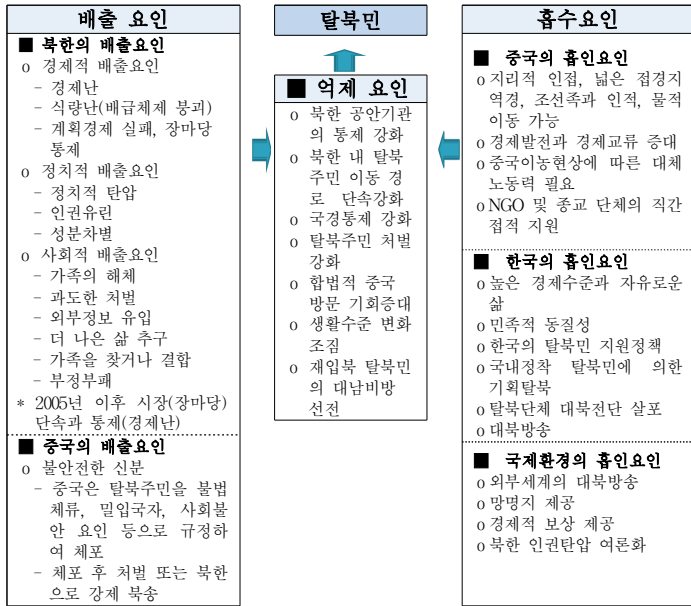
탈북민은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 거주지를 새로운 지역(국가)으로 옮긴 이주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내정착 탈북민은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 북한지역을 탈출한 후 공간적 이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새롭게 정착한 ‘탈북이주민’이다. 인구의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론은⁴⁾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인구학, 심리학, 법학, 인류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⁵⁾ 논의되어 왔다. 탈북민의 이주에 관한 이론은 다양한 개별사례에 ‘양적(quantitative)’ 분석을 통하여 접근하는 ‘배출-흡인 이론’(push-pull theory)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김윤영 2013, 110-111).

북한주민들의 탈북은 북한체제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한 배출요인과 외부세계에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흡인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배출요인이 개인적 비리나 정치적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저변에는 배출을 촉진시키는 북한내부의 사회적 변화와 한국과 중국 등 국제정세의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김윤영 2013, 111; 박명규·김병로 외 2011, 57). 북한주민들의 배출·흡입·억제 요인을 유도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표 1>에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초기 경제학 영역에서 시작된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분야로 확대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정치학 분야에서도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학문분야의 구획을 넘어서 국제이주의 주제들을 학제 간 분석을 통해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홍매 2011, 8).

5) ‘배출-흡인이론’, ‘이주체계론’,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ur market theory), ‘이주의 신경경제학론’(New economics of migration theory), ‘세계체계론’(World system theory), ‘사회연계망론’(Social network theory), ‘이주정책론’(Theory of migration policy) 등이 있다(OECD 2009, 60; 박세훈·이영아 외 2009, 43 재인용).

<표 1> 탈북민의 배출·흡인·억제 모형



<김윤영 2013, 112>.

3. 탈북민 국내입국 현황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 6월말 현재 26,854명을 넘어섰다. 6.25전쟁 이후 2007년까지 국내입국 탈북민들은 1만 명 수준이다. 1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여 국내로 입국하는데 5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2년 만에 5천명의 탈북민이 더 입국하였다. 이처럼 빠른 시간에 걸쳐 탈북민들의 국내입국 증가는 그들의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치안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김윤영 2013, 115).

<표 2> 탈북민 연도별 입국 현황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6 (잠정)	합계
남(명)	2,380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131	8,078
여(명)	2,037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601	18,776
합계(명)	4,417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732	26,854
여성비율	46%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81%	70%

※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

III. 탈북민 신변보호 지원체계와 문제점

1. 탈북민 신변보호 지원 체계

1)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탈북민의 신변보호는 법률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 지침」(이하 신변보호지침)⁶⁾ 등에 근거하고 있다.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항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근거에 의해 시행령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항은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하

6) 전부개정 2008. 06. 09(경찰청지침).

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신변보호 대상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탈북민(법 제2조2)을 의미한다. 탈북민 정착지원 시설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법 제2조3), ‘보호금품’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의미한다(법 제2조4).

2) 신변보호 방법

(1) 신변보호 의미

신변보호⁷⁾라 함은 거주에 정착한 탈북민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각종 위해로부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기관(경찰관서)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신변보호경찰관(보안경찰관)은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죄예방은 물론 북한 공작원이나 국내 친북세력 등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위장귀순 등 보안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2) 신변보호경찰관서

경찰청장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을 신변보호경찰관서로 지정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신변보호경찰관서로 지정한다. 신변보호경찰관서는 보호대상자가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하고, 효율적인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경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은 신변보호과정에서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업무 중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신변보호지침 제4조).

7) 법률 제9조에 의하면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협박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등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변보호 지정절차·등급·기간

첫째, 경찰청장은 관계기관(통일부장관)이 거주지 편입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조해야 하고(시행령 제42조), 지방경찰청은 거주지에 편입한 탈북민에 대하여 신변보호경찰관서를 지정하고, 신변보호경찰관서장은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도 등급에 따라 신변보호경찰관을 지정한다.

둘째, 신변보호경찰서장은 신변보호 대상자 신변위해도 따라 ‘가급’, ‘나급’, ‘다급’으로 분류하여 신변보호경찰관을 배정한다.

셋째, 탈북민의 거주지 신변보호 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보호기간이 경과하였다라도 대상자의 신변위해 정도를 감안하여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신변보호가 종료되었거나 거주지 전입시 신변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 사망 등 중요한 신상변동 사항 등에 대한 각종 통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4) 해외여행자 신변보호

신변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신변보호대상자의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유보하도록 하고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서장은 신변보호대상자의 출국목적, 출국예정일시, 체류지, 연락처, 귀국예정일시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탈북민들의 신변보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국가의 해외여행을 통제할 마땅한 강제규정이 없어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한 실정에 있다.

2. 탈북민 신변보호의 만족도와 문제점

1) 거주지 보호활동에 대한 만족도

경찰청의 『2011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거주지 보호담당관에 대한 만족도는 신변보호경찰관의 신변보호 25.2%(8,058건), 지자체의 거주지 지원 20.9%(6,683건), 노동부의 취

업지원 5.2%(1,6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탈북민들의 신변보호에 대한 만족도(25.2%)는 대체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자체의 거주보호담당관 활동에 대한 만족도(20.9%)는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특히, 노동부의 취업보호담당관의 지원활동은 아주 낮은 만족도(5.2%)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변보호제도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나, 취업보호담당관과 거주보호담당관 제도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탈북민 보호담당관 제도의 역할분담과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탈북민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상담할 수 있는 신변보호경찰관에게 취업 및 거주지 보호 분야까지 해결해 주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신변보호경찰관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 취업과 거주지 지원문제까지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즉, 현재 신변보호경찰관은 취업보호담당관과 거주보호담당관의 미흡한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실정에 있다.

<표 3>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

구분 계	하나원 교육	통일부의 정착금 지급	노동부의 취업지원	경찰의 신변보호	교육부의 교육지원	지자체의 거주지 지원	탈북자 지원재단의 지원
31,927건 (%)	3,328 (10.4%)	9,364 (29.3%)	1,657 (5.2%)	8,058 (25.2%)	2,085 (6.5%)	6,683 (20.9%)	752 (2.4%)

<출처: 전기완 2012, 33. 1인이 조사항목 2개 응답>

2) 신변보호 활동의 문제점

(1) 탈북민 접촉의 어려움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에 대한 과잉 신변보호와 지원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은 신변보호업무 외에도 그들의 애로 사항인 취업, 결혼, 건강, 금전 문제 등 다양한 사적 문제를 직접 만나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일부 탈북민은 신변보호활동을 사생활 침해나 간섭, 수치심 유발, 인권침해, 감시 등으로 오인하여 부담스러워하고 있다.⁸⁾ 특히, 신상확인을 위한 전화 통화까지 감시로 오인하여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 신변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들은 신변보호경찰관의 잦은 연락 문제를 신변보호활동의 개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⁹⁾

(2) 거주지 확인의 어려움

탈북민들은 취업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북한에서 익힌 기술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에 이르지 못해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파트타임 서비스업(음식점·유흥가 등)을 비롯한 단순 근로직종 종사로 인한 저임금, 센 노동 강도에 의한 근로환경의 불만족 등은 잦은 이직 현상으로 나타난다(통일부 2012, 7-8).

탈북민들은 남한생활의 풍요로움에 대한 상대적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돈벌이가 비교적 쉬운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이나 경제사정이 좋은 전국 각지로 이직을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에서 체득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으로 인해 직장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 두는 등 취업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이 탈북민들의 잦은 이직현상으로 인해 신변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달라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 파악하기 쉽지 않아 신변보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신변보호 업무 증가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민들의 신변보호와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8) 탈북여성(23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찰들이 사생활까지 깊이 알고 있고 ... 저는 담당형사들이 간섭하는 게 정말 보호해주려고 하는 건지 ... 감사하긴 해도 어떤 때는 우리한테 뭐 뽑아낼게 있어서 저런가 할 정도로 간섭하는가 싶을 때는 정말 답답해요.”(박호성·김영수 외 2005, 104).

9) 탈북민들은 신변보호경찰관의 전화, 방문 등의 잦은 연락에 대해 32.2%가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응답했다(2013년 5월 6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안업무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변보호가 형식적으로 변질될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 최근 탈북민들 중 위장 탈북민 간첩, 재입북, 해외 재망명 등의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범죄의 다양화와 탈북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요구사항 증대 등으로 인해 신변보호경찰관의 수요는 더욱 증가되고 있다. 북한은 국내정착 탈북민을 대상으로 비난과 협박, 보복 등 테러 기도를 공공연히 운운하고 있어 신변보호경찰관의 업무는 더욱 가중 되고 있다.¹⁰⁾

(4) 인력과 예산 부족

2014년 6월말 현재 신변보호경찰관 1인당 34.9명의 탈북민을 보호하고 있어 2007년 12.6명에 대비 2.8배 증가하였다.¹¹⁾ 신변보호경찰관 1인당 탈북민 50명 이상을 관리하는 관할 경찰서도 있다. 신변보호대상자 '가'급은 경찰관 1명 이상을 배정하여 직접·상시적으로, '나'급은 경찰관 1명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각각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신변보호담당경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탈북민 거주 수에 비례하여 신변보호경찰관을 배정하지 못하는 경찰관서도 있다. 부산경찰청의 경우 2012년 8월 현재 신변보호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탈북민이 가장 많은 곳은 사하구로 43.6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남부구로 1.7명으로 지역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신변보호 업무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박덕흠 2012). 이외에도 인천 남동구(1,354명), 서울 양천구(1,129명), 노원구(986명), 강서구(893명), 경기도 화성시(498명)와 안산시(477명) 등 탈북민 집단거주지역 관할경찰서의 신변보호경찰관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10) 2010년 4월 20일 북한 경찰총국 공작원 김명호(36)와 동명관(36)이 위장탈북한 후 황장업씨를 암살하려다 정보당국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

11) 2007년 704명의 신변보호경찰관이 8,855명(2007.1.31)의 탈북민을 보호했으나, 2014년 6월말 현재 26,854명의 탈북민을 770여명의 신변보호경찰관이 보호·관리하고 있다.

(5) 탈북민 신변위해 증가

탈북민들의 해외여행 대다수는 중국을 선택하고 있어 신변위해 요인이 증가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여행 중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에서 파견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노출되어 강제 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¹²⁾ 이외에도 국내입국 전 중국에 체류했던 경험을 둔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여 중국동포(조선족) 등과 연계한 공문서 위조나 마약 유통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탈북민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증가되고 있다. 최근 탈북단체들이 대형풍선을 이용하여 김정은 세습체제 비판과 '김정은 처단' 등을 선전 선동하는 배라를 살포하자, 북한은 배라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탈북민을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첫째가는 처단대상"으로(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2010) 낙인찍는 등 탈북민 단체와 개인의 명단까지 거명하며 보복하겠다는 극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탈북민 단체들은 굴하지 않고 대북전단지 살포를 지속하고 있어 탈북민 단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 국가안보위해 요인 증가

최근 북한은 전통적인 대남공작부서인 '255부'(구 당 대외연락부)를 비롯하여 국방위원회 직속 대남공작부서인 '경찰총국'(당 작전부, 35호실, 군 경찰국 통합부서), 반탐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까지 총 동원하여 직접 양성한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탈북민의 국내 입국 루트(route)를 통해 합법적으로 남파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목적상 한국과 중국 또는 북한과 중국을 오

12) 2012년 5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국경지역 반탐부서에 새로운 '반간첩 투쟁부서'를 조직하여 탈북민 가족 감시·협박, 국경지역으로 오는 탈북민 체포, 국경지역의 남한 입국경험 조선족 납치 등을 자행하고 있다. 탈북민 김○○-고○○ 부부는 2012년 11월 중국 연길을 여행하던 중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에 납치되어 재입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는 탈북민을 체포한 후 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의 가족을 볼모로 대남공작원으로 포섭하여 활용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 10년간 50여명의 간첩을 구속했고, 이중 40.0%인 20여명이 탈북민 위장 간첩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탈북민 위장 간첩의 경우 국내정착 탈북민을 대상으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다 체포되었다. 2012년 탈북민의 재입북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 2013년 탈북민을 복송한 혐의로 구속된 채○○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찰총국은 탈북민 위장 간첩 남파를 통해 고위층 출신의 탈북민을 암살하는 임무를 지령하고 있다. 2010년 남파된 정찰총국 소속 간첩 3명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시도했고, 2011년 남파된 정찰총국 소속 안○○은 탈북민 출신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의 살해 임무를 맡고 활동하다 검거된 바 있다. 2014년 구속 기소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홍○○은 탈북브로커 유○○ 유인·납치 지령을 받고 남파되었다.

국내정착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재입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재입북한 탈북민의 경우 기자회견을 통해 탈북행위의 정당성을 알리면서 북한체제 선전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¹³⁾ 재입북 탈북민들 중에는 북한당국의 지령에 의해 위장 탈북한 후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도 포함되어 있다. 탈북민들의 재입북 루트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통한 입국, 북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이용한 공개적인 입국, 제3국을 통해 입북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7) 사회일탈로 인한 치안수요 증가

탈북민들은 하나원에서 사회정착교육을 받은 후 거주지에 편입하여 직장생활을 하게 되지만 우리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정부가

13) 박○○(2012.7.5), 전○○(2012.7.19)이 잇따라 재입북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정보원들의 유인전술에 걸려 남한으로 끌려갔다”며 남한 체제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선동 활동을 하였다.

지급한 정착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정착금마저도 본인 및 가족들의 국내입국 경비를 비롯해 사기와 투자 실패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범죄, 보험범죄, 문서 위·변조, 절도, 사기, 폭행, 성매매 등 다양한 범죄환경에 노출되고 있다.¹⁴⁾ 이외에도 탈북민들은 사회정착 과정에서 사기범죄 피해율이 높은 편이다. 사기범죄는 먼저 정착한 탈북민과 사기꾼이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업투자, 고수익보장 투자, 마약, 성매매, 다단계 등과 관련한 사기행각을 벌였다(김윤영 2013, 119-120).

IV. 탈북민 신변보호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1. 신변안전 대책 법규 재정비

1) 해외여행 사전·사후 보고 강화

북한당국은 중국에 탈북민 체포조를 파견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여행 한국국적 탈북민과 탈북민 지원 종교단체나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체포하여 강제복송하고 있다. 그럼에도 탈북민들이 신변안전대책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신변보호지침 제12조(해외여행시 신변보호)에 신변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국가의 여행을 자제시킬 수 있는 법규 신설이 필

14) 2010년 6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자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35.4%(17명), 폭력 25%(12명), 살인 20.8%(10명), 재산범죄 14.5%(7명), 도로교통위반 6.3%(3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범죄가 흉포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은 국내입국 후에도 북한에서 아편을 의약품으로 사용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마약'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북한산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국내 및 일본 등지에 밀매하고 있다.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자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17명(약 3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모두 공범이 존재하며 한 명을 제외한 공범전원이 탈북자로,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복용하고 있었다(정준우·고성호 2010, 77).

요하다. 예를 들어 “신변보호대상자는 신변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국가로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 “신변보호대상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출국목적·출국예정일시·체류지·연락처·귀국예정일시 등과 관련한 해외여행 계획을 신변보호경찰관서에 보고하고, 해외여행 후 해외여행시 신변위해 요인 여부에 대한 결과보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김윤영 2013, 129).

2) 신변보호종료자 해외여행시 협조 의무화

현행 법규로는 신변보호 종료자 탈북민들의 신변위험 국가 여행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법적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변보호 종료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신변보호경찰관서장에게 여행계획과 여행결과에 대해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탈북민이 해외여행 신청 시 신변안전 교육 및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 연락체제 유지 강화 법규 마련

탈북민 보호 관련 법령과 지침에 연락체제가 두절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법규를 신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북민 행방불명, 무단전출입, 해외 장기체류, 신변안전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해외여행 등을 할 경우, 신변보호경찰관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신변보호경찰관의 역량 강화

1) 신규인력 충원

신변보호경찰관 1인당 탈북민 담당 인원은 신변위해 요인, 국가안

보위해 요인, 테러 가능성, 범죄와 범죄피해, 해외위장 망명, 위장탈북민 간첩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14년 6월말 현재 34.9명의 절반 수준 이하인 15명(2007년 수준) 이하로 해야 한다. 즉, 현재 770여명의 배수준인 신변보호경찰관을 최소한 1,50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는 신변보호경찰관 1인당 담당 신변보호대상자 12.6명이었던 2007년 경우 위장 탈북민 간첩이나 재입북 탈북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2) 전문요원 양성

탈북민 신변보호의 전문화를 위해 보안경찰관 중 심리학 전공자나 북한학 전공자를 선발하여 재교육을 실시한 후 신변보호경찰관으로 배정해야 한다.¹⁵⁾ 현재 근무 중인 신변보호경찰관을 심리학이나 북한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재교육과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신변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신변보호와 관리 전문화를 위해 경찰관서별로 탈북민 관리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김윤영 2012, 164-165).

3) 전문 신문관 양성

신변보호경찰관 중 전문 신문관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보안업무 수행 경험이 최소한 5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동신문과정 위탁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전문 요원으로 양성해야 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신변보호경찰관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경우 그들이 가진 정보력과 신문기법으로 인권침해¹⁶⁾ 문제를 최소

15) 현재 보안수사요원을 차출하여 신변보호경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16)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12년 4-9월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20-69세 탈북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동신문기간 직원의 언행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응답자가 43.1%에 이르렀다(안태윤·황해동 2012, 198).

화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신변보호 관리시스템 체계화

1) 탈북민 관리 강화

첫째, 탈북민의 체류국과 경유국인 중국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보안경찰 신문관(영사)을¹⁷⁾ 파견하여 위장 탈북민 간첩을 색출해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은 탈북민이 체류하는 중국과¹⁸⁾ 탈북민 주요 경유국인 태국에 우선적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탈북민 전문 신문관(보안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로 송환하여 주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김윤영 2011, 132).

둘째, 위장 탈북민 간첩이 입국한 후, 합동신문과정과 거주 신변보호 기간이 끝나면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2차 검증이 필요하다. 재검증 과정에서 탈북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재검증시스템은 사회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자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김윤영 2013, 128-129).

셋째,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한 기간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탈북민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담당 신변보호경찰관은 해당 탈북민의 신변보호카드를 진출지역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전 주소지 담당 신변보호경찰관으로 부터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위장탈북 여지가 있는 자들은 담당 신변보호경찰관의 관심영역에서 벗어나고자 주소를 자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잦은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여, 주소지 이전 전에 담당했던 신변보호경찰관과 주소지 관할 신변보호경찰관 또는 보안수사대 요원 간에 상호 협조하여

17) 현재 일부 탈북민 체류 국가에 정보기관 탈북민 신문관을 파견하고 있다.

18) 중국은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중국동포 집단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영사관을 중심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의심 자에 대한 심층 내사로 위장탈북민을 색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신변위해 요인 차단

첫째, 신변보호대상자를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변보호경찰관 1명당 35명의 탈북민을 관리하고, 북한과 안보위해세력들의 탈북민들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탈북민들의 집중관리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탈북민 집중관리제는 신변보호경찰관서 신변보호경찰관이 파출소나 지구대와 협조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김윤영 2013, 131).

둘째, 탈북민의 신변위해를 운운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이버공간의 차단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은 탈북민들을 배신자, 처단대상자 등으로 비난하는 글을 탈북단체나 민간단체 홈페이지에 공공연히 게재하여, 이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등 탈북민들의 심리적 공포감 조성과 그들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탈북민 사이버테러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공작 인터넷사이트, 국내의 친북 인터넷 사이트, 탈북민지원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탈북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게재물을 삭제하거나 침투경로를 추적하여 역 공작 등의 적절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김윤영 2011, 134).

셋째, 신변안전을 문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가족 상봉을 미끼로 탈북민을 유인 납치하여 강제 복송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중국의 연길, 심양 등을 통하는 탈북 루트에 대한 파악을 모두 끝내고 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요원을 총 동원해 탈북민 납치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서는 탈북민들에게 주기적인 문자발송을 통해 신변안전을 위한 수칙이나 중국 등 신변위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 여행시 지켜야할 주의 사항 등을 문자로 발송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탈북민 전담관리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고려하여, 이들의 효율적인 신변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하고, 가칭 ‘탈북민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경찰청 보안국 내에 탈북민은 물론 국외 체류 탈북민을 지원·관리하는 1개과를 신설할 수 있다. 가칭 ‘탈북민 지원과’에서는 탈북민 관리(1계), 탈북민 합선 및 수사(2계), 재외탈북민 지원·관리(3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경찰청 보안과 내에는 ‘탈북민지원계’를 신설하고, 탈북민 1,000명 이상 집단 거주 관할 경찰서에는 보안과 내에 ‘탈북민 지원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3) 신변보호 매뉴얼화로 체계적 관리

보안경찰관이 분야별 매뉴얼을 통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있듯이, 신변보호경찰관 역시 탈북민 ‘신변보호 매뉴얼’ 및 ‘신변보호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변보호경찰관은 ‘범죄경력자’나 ‘범죄 가능성이 높은 자’, ‘범죄 의심자’, ‘주거이동이 잦은 자’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탈북민이 타 지역 진출시, 변경되는 담당 신변보호경찰관에게 철저히 인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이외에도 신변보호경찰관서는 형사법과 탈북민의 범죄 및 피해 사례들을 모아 ‘생활법률 매뉴얼’과 ‘범죄예방 매뉴얼’로 제작하여, 신변보호대상자와 접촉시 배포하거나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신변안전 및 안보교육시 배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V. 결론

지금까지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활동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신변보호 개선방안으로 신변안전 대책 법규 재정비, 신변보호경찰관의 역량 강화, 신변보호 관리시스템 체계화 등과 관련하여 실무

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도 중요하지만 탈북민들의 의식체계를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탈북민 사회정착 지원이 우리사회 동화를 요구하는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다면, 이제는 우리사회가 그들을 먼저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하여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름의 개성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듯이, 탈북민 역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특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포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 탈북민들의 사회정착 적응에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통일의 매신저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동서독 주민들은 상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람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목과 갈등의 후유증이 횡횡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언하였지만, 탈북민 신변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연구가 학문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진한 연구이지만 신변보호경찰관의 실무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오늘도 북한주민들은 생존과 인간적인 삶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탈북한 후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된 신분적 한계를 넘어 파라다이스의 꿈을 안고 국내입국을 희망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윤영, 200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 200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2호 pp. 195-227.
- _____, 2009,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교정담론』, 제3권 1호 pp. 1-26.
- _____, 2010,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pp. 289-325.
- _____, 2011,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및 인권보호 개선방안0』,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 2012,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 치안확보 방안 연구』,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 2013,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방안 고찰”,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pp. 107-138.
- _____, 2007,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실상 및 치안확보 방안 연구』,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윤영·이상원, 2011, “탈북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경찰관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3집 pp. 66-97.
- 김재광, 200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김홍매, 2011, “한국과 일본의 국제이주정책 비교 -‘노동력’ 이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2010. 3. 23.
- 박덕흠, “부산 탈북자 932명, 신변보호담당관 46명 1인당 20.3명관리”(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 10. 18.
- 박명규·김병로·김수암·송영훈·양운철, 2011, 『노스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박세훈·이영아·김은란·정소영,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서울: 국토연구원.
- 박호성·이규영·김영수·진희관·Wilke Manfred, 2005,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조동수·김수연, 2013. “브로커 ‘쩨의 유혹’에… 탈북자들 위험한 거짓 망명”, 『동아일보』 (6월 6일).
- 전우택·윤덕용·민성길, 2001,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2호 pp. 203-216.
- 안태윤·황해동, 2012,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임채완·김홍매, 2011, “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 pp. 189-208.
- 장준오·고성호, 2010, 『탈북자 범죄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이진환, 2007,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기완, 2012,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과 보안경찰의 역할”,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조용관·김윤영, 2009,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서울: 도서출판한울.
- 통일부, 2012,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 _____, 2013, 『201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OECD, 2009, *The Future of International Migration to OECD Countries*, OECD.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by the Security Police

Kim, Yun-young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Lee, Sang-won
(Yongin University)

Abstract

As of the end of June 2013, 26,854 North Korean refugees had settled in our community, while an estimated 30,000-100,000 temporarily resided in China under the continuing fear of forced repatriation, but maintaining a hope to be admitted to the Republic of Korea or Western countries. When North Korean refugees enter South Korea, investigations are performed by the joint interrogation agency for a certain period and essential settlement education is conducted in Hanawon, after which they can move to their new residence. Korean governments have provided various services for refugees in order to assist successful settlement. However, issues such as the re-entrance of refugees to North Korea, a spy who masqueraded as a refugee, and crimes committed by North Korean refugees or targeted on them, have been brought to public attention. The safety of North Koreans has been questioned, and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police's role has arisen in our society. Nonetheless, the issues related to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by the security police have been studied by only a few

researchers. Overall,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This study reveals current problems about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by the security police and suggests a reinforced protection scheme, enhancing capability of the security police, reorganization of the protection system, and prevention of social deviation activity by refugees. The most pivotal choices remain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s. There will be successful settlement when they make an endeavor themselves, rather than remaining reliant on the government or society.

Key words : North Korea,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Security police, Settlement